

#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김경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03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11. 7.

발의자 : 김경수 · 신창현 · 김병관  
이원욱 · 서형수 · 정성호  
안규백 · 윤관석 · 전재수  
오제세 · 김민기 · 황희  
박정 · 심기준 의원

(14인)

### 제안이유

대·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큰 이유 중 하나는 중소기업의 성과급 등 특별급여가 대기업의 29% 수준으로 크게 낮기 때문이며 이는 청년층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 원인이 됨.

또한 중소기업 사업주의 성과공유에 대한 이해나 의지 부족으로 성과공유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36% 수준에 불과하여 중소기업의 성과공유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 뒷받침이 필요함.

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이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성과를 공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우대 지원할 수 있으나 정책목적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미흡함.

이에 중소기업에 성과공유 문화 확산을 통한 임금 격차 축소, 우수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성과공유기업 정의, 성과공유 유형 등 성과공유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 주요내용

- 가.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정의하고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7조의2 제1항).
- 나. 중소기업의 성과공유 확산을 위하여 성과공유기업이 되려는 중소기업에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7조의2제2항).
- 다. 성과공유기업 및 성과공유기업이 되려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 및 성과공유기업 확인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(안 제27조의2 제3항).
- 라. 성과공유기업 및 성과공유기업이 되려는 중소기업이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7조의2제4항 신설).

##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의2제1항 중 “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”을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(이하 “성과공유기업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표준적인 성과 공유 제도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으며,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”을 “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공유 확산을 위하여 성과공유기업이 되려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2항”을 “제1항 및 제2항”으로, “절차”를 “성과공유기업 확인절차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정부는 중소기업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부 지원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.

## 부 칙

օ)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  
은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 
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  
다.